

유학생 학력·학위 입증서류 변경 안내 ['13.5.1]

최근 일부대학 유학생이 위조학위증 등을 제출하고 유학 (어학연수 포함)사증 발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'13.5.1.부터 국내에서 유학 (D-2) 및 어학연수 (D-4-1)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 (학력) 입증서류가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(단,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).

1. 대상 :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가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에서 학위 (학력)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유학 (D-2), 어학연수(D-4-1)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자

<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>

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 (총 21개국)

2. 학위 (학력) 입증서류 : 아래 ①,②,③ 중에서 택일

- ① 아포스티유 (Apostille) 확인을 받은 학위 (학력) 입증서류
- ②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
-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(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지에 한함)

< 적 용 예 시 >

가.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(학력)를 취득한 경우 : Apostille 확인,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제출
 나.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(학력)를 취득한 경우 :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·학위인증센터에서 인증보고서 발행 후 제출

3. 중국교육부 학력·학위 등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

- ① 학력인증 :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
(교육부 학력인증센터, <http://www.chsi.com.cn>)에 신청
- ② 학위인증 :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
(교육부 학위인증센터, www.cdgdgc.edu.cn)에 신청
- ③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(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, <http://www.cis.or.kr>)를 통해 신청 (문의:02-554-2688)

※ ① - ③ 모두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 바람

※ 개인이 직접 ① 또는 ②번 사이트에서 인증 받은 학력입증서류도 인정하나 이 경우 온라인상 검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(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, 연장 가능)

4. 기 타

-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학력검증, 최종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학위 검증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 (졸업인증보고서)를 제출할 것
- 편입인 경우 최종학력 (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) 검증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검증